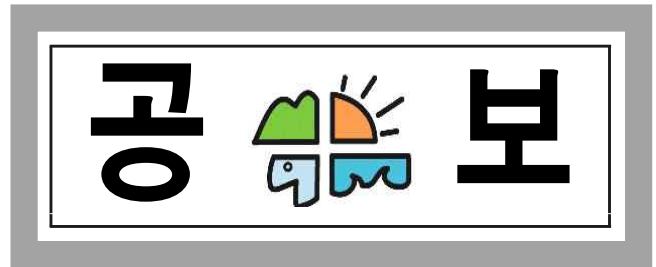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029호 2016년 11월 16일(수)

공 고

-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5
- 동절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중지 공고 10

속초시 공고 제2016 - 773호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위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는 시장의 재량이며, 현재 우리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만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규정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위원회가 없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공원녹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공원녹지과(공원녹지팀)
- 연락처 : 033-639-2422 (FAX 033-639-254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규칙 제정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운영위원회 구성·임기·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운영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출석발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담당(전화: 033-639-2686, FAX: 033-639-273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033-639-26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고 속초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속

초시보건소장,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고용센터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청소년활동 및 보호, 청소년지원 시설의 장
5.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전출·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

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절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중지 공고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상수도 개인급수공사에 대하여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부설시공 방지 및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시중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속 초 시 장

1. 중지기간 : 2016. 12. 05. ~ 2017. 03. 03
2. 중지내용 :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
3. 중지사유 : 동절기 부설시공 방지 및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4. 문 의 처 : 속초시상수도사업소(☎ 033-639-2668)